

보도시점

(전매체) 2. 13(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3+3→4+4년)
- 이 외에도 공공구매 실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달청 통계 요청 근거, 성능인증 업무 위탁 근거 등이 개정안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성우 (044-204-7540)
		담당자	사무관	조무근 (044-204-7545)



현행	개정안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u> ⑦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u>3년</u> 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u>3년</u>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 ----- <u>4년</u> -----. ----- ----- <u>4년</u>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u>제13조제2항</u> ,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u> ----- ----- -----

현행	개정안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 -----.